

□ **제도 안내**

- **(목적)** 환경정보공개를 통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녹색경영 유도
 - ※ 추진근거 :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6조의8, 제16조의9, 제31조 제4항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(환경부 고시)
- **(대상)** 녹색기업, 공공기관, 환경영향이 큰 기업,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등 **1,910개 기업·기관**(소속사업장 4,084개소, '24년 기준)
 - ※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국공립대학, 지방공기업, 지방의료원,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업체,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, 녹색기업 등
- **(항목)** 업종에 따라 제조, 공공행정, 교육서비스, 보건, 기타서비스, 기타산업의 **6개 유형으로 구분하며 유형별 19개~27개 항목***으로 구성
 - * 기업개요, 녹색경영체계, 자원·에너지 사용량,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 (의무/자율 구분)

<표> 6개 유형 구분

| 유형 | 제조 | 공공행정 | 교육서비스 | 보건 | 기타서비스 | 기타산업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항목 (개) | 총 27 의무13, 자율14 | 총 19 의무8, 자율11 | 총 19 의무6, 자율13 | 총 19 의무7, 자율12 | 총 19 의무6, 자율13 | 총 27 의무13, 자율14 |

- **(절차)** 대상기업 공고(환경부, ~4.30) → 정보 등록(기업·기관, ~6.30) → 검증(기술원, 7~12월) → 대국민 공개(환경부, ~12.31)



※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별도의 추진 절차로 진행 예정

- **(환경정보공개 홈페이지)** www.env-info.kr 환경정보조회를 통한 기업·기관의 공개된 환경정보 확인 가능